

# 제 안 설 명 서

[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]

영 주 시

##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208

제출년월일 : 2001. 11 .  
제출자 : 영주시장

### 1. 개정이유

양로원 소재지 토지의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변경, 양로원명칭 명시 및 노인 복지법시행규칙 개정(2001. 2. 10 보건복지부령 제189호)에 따른 입소대상자 명칭을 관련법령에 맞게 보완·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#### 가. 양로원소재지 토지의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변경

- 영주시 조와동 산69-5 → 영주시 조와동 458-3(안 제2조)

#### 나. 양로원 명칭 명시

- 양로원의 명칭은 「만수촌」으로 함(안 제2조)

#### 다. 입소대상자 명칭변경

- 생활보호대상노인 → 생활보장대상노인(안 제8조 및 제9조)

### 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# 5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관계법령(발췌) 1부.

##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증개정조례(안)

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(명칭 및 위치) 양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

명 칭	위 치	비 고
만수촌	영주시 조화동 458-3	

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9조 제1항 단서중 “생활보호대상노인”을 각각 “생활보장대상노인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【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증개정조례(안)】

현 행	개 정 안						
제2조(위치) 양로원은 영주시 조와동 산69-5번지에 둔다.	제2조(명칭 및 위치) 양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명 칭</th><th>위 치</th><th>비 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만수촌</td><td>영주시 조와동 458-3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비 고	만수촌	영주시 조와동 458-3	
명 칭	위 치	비 고					
만수촌	영주시 조와동 458-3						
<p>제8조(입소대상자) ①양로원 입소대상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활보호대상노인 중 65세 이상의 자</li> <li>2.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</li> </ol> <p>②제1항의 입소대상자 중 부부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인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입소대상자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생활보호대상노인-----</p> <p>-----</p> <p>2. 생활보호대상노인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					
<p>제9조(입소절차) ①양로원 입소대상자가 양로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생활보호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&lt; 생략 &gt;</p>	<p>제9조(입소절차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생활</p> <p>보호대상노인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						

## 관련법령 (발췌)

### 【노인복지법】

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.

1. 양로시설 :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~ 5. < 생 략 >
- ② ~ ③ < 생 략 >

### 【노인복지법시행규칙】

제14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)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양로시설 :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
  - 가. 생활보장대상노인
  - 나.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종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2. ~ 5. < 생 략 >
- ② ~ ④ < 생 략 >

제15조(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) ① 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.

② 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생활보장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.

⑤ ~ ⑥ < 생 략 >